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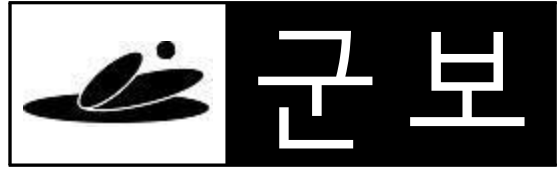
제 667호

군

보

2022. 7. 1.(금)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67호 2022. 7. 1.(금)

입법예고

○ 예산군 입법예고 제2022-1264호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회									
람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담당관 ☎ 339-7144)

예산군 공고 제2022 - 호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예산군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2. 제안이유

- 여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 원칙이나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경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서 “기본 조례”라는 제명을 권고함에 따라 제명을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수탁기관 선정 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전반에 걸쳐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제

도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 행)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개정안)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나.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 1)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사전 적정성 검토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
- 2) 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 동의안 구체화(안 제5조)

다.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화

- 1)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 자격요건 등 구체화 및 이해충돌방지 조항 신설(안 제6조, 제7조, 제8조)
- 2)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방법, 결과 등 공개(안 제11조)
- 3)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마련(안 제12조)

라. 사후 관리를 통한 책임성 제고

- 1) 성과평가 규정 신설(안 제20조)
- 2) 재계약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안 제17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7. 21.(목)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 서무팀(☎ 041-339-7212, fax 041-339-72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22. 7. 1.(금) ~ 2022. 7. 21.(목)
-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총무과 서무팀(우편번호 3243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사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 서비스의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예산군의 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7조에 따른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군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제4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민간

위탁 사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민간위탁사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3. 예산군의회 의원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해당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의 부서에서 구성

· 운영하고 심의 또는 이의신청 절차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망·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무의 전문성·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 도입이 어려운 경우

2.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로서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사무의 관계법령에서 공개모집의 예외를 인정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대상 기관의 규모,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등 업무 운영 능력

2. 재정 부담 능력 및 비용 절감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고용 승계·유지 및 근로조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

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기간

4. 민간위탁 사무명 및 그 내용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5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7. 관리·감독, 감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위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9.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10. 이용자, 종사자 등과 해당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수반되는 경우 그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4조(고용승계) ①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기간 중 특별한 사유로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면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군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제15조(운영 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

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등의 징수·관리)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액에 납부하게 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재계약) ① 군수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관리·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9조(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②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③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④ 예산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4조제3항 중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로 한다.

⑤ 예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로 한다.

⑥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로 한다.

⑦ 예산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로 한다.

⑧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로 한다.

⑨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로 한다.

⑩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로 한다.

⑪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⑫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⑬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⑭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⑮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⑯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⑰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⑱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⑲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⑳ 예산군 행복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㉑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㉒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㉓ 예산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㉔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㉕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㉖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㉗ 예산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